

의안번호	2219515
의 퇴 인	김종민의원
회 답 일	2026. 7. 20.
추계번호	26C3090

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4항 (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) 및 안 제21조 (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)	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업무에 문화예술치유 지원을 포함한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을 추가함(안 제10조제4항제10호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<u>문화예술치유 지원을 포함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</u> 을 추진하고, 이에 필요한 인력·시설·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1조)	의무규정
2	안 제27조의3(문화예술치유사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치유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추고 문화예술치유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문화예술치유사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화치유사의 자격을 부여하고,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,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문화예술치유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(제5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제4항 (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) 및 안 제21조 (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)	미대상: 개정안에서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추진에 있어 문화예술치유 지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“문화로 치유 지원” 사업(2026년 예산: 50억원)을 이미 실시 중으로서, 개정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
2	안 제27조의3(문화예술치유사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문화예술치유사 자격제도 운영(안 제27조의3)

- 개정안은 문화예술치유사 자격제도를 마련하여, 문화예술치유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추고 문화예술치유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별도의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, 시험제도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및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등 예산소요가 예상되나 운영방향이 마련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－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가자격제도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, 이를 위하여 2026년 기준 4억 9,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¹⁾

- ### 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### □ 없음

1) 문화예술교육 활성화(1535-301) -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 내역사업 중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운영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